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95-32
----------	-------

제출년월일 : 1995. 7.

제 출 자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94. 3. 16 법률 제4741호)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관련조례를 관련법규에 맞춰 새로이 정하고, 기존의 일비 및 여비조례는 폐지함으로써 의회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비용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 동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3. 주요골자

- 의원의 비용지급 종류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등으로 정함(안 제2조)
-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월 350,000원 하고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안 제3조)
- 회의수당은 회의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1일 50,000원 하고 회의 종료일에 지급(안 제4조)
- 여비는 공무로 여행할 경우로 하고 국내여비 기준표와 국외여비 기준표를 적용지급(안 제6조·제7조)
- 종래의 비용지급 규정인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부칙 제2항)

4. 제정조례안 : 별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지급의종류)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활동 보상을 위한 의정활동비
2.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3.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3조(의정활동비지급) ① 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월 350,000원으로 한다.
- ③ 의정활동비는 매월 달서구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회의수당지급) ①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 ②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한다.
- ③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 ① 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②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 ③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②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회사무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1]에 의한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함은 대구광역시 내에서의 출장

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등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 예를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
-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6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동차 운 입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u>6,500</u>	<u>20,700</u>	<u>11,000</u>
의 원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u>6,500</u>	<u>16,200</u>	<u>10,500</u>

<비 고>

1.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요금의 정액은 교통부 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 요금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요금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6조제2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야당)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장 · 부의장	· 2등급이상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2등급이상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등 정액		가등급	가등급	가등급	140	170	195
					25	130	107			
의원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 정액	실비액	나등급	나등급	나등급	130	155	180
					25	90	78			
					다등급	다등급	다등급			
					25	72	58			
					라등급	라등급	라등급			
					25	62	49			
가등급	가등급	가등급	130	155	180					
20	114	81								
나등급	나등급	나등급								
20	74	59								
다등급	다등급	다등급								
20	55	44								
라등급	라등급	라등급	130	155	180					
20	46	37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 (1) 아세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메이카.
-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 (4) 중동,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루운,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등급

-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 터어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 (3) 유럽주 :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 (4) 중동, 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튀지, 네팔, 몽골.
-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아르헨티나.
-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 (4) 중동, 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위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